

의안번호	제 533 호
의결 연월일	2016. 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발의자	김학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11 월 22 일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김학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11 월 22 일

발 의 자 : 김학철, 연철흠, 박봉순
박한범, 최병윤, 이연구
김인수

1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세계유산의 등재 조항 삭제 (안 제21조)
- 나. 세계유산 등의 보호·관리 조항 삭제 (안 제22조)
- 다. 세계유산추진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 (안 제23조)

3. 개정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신.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- 라. 협 의 : 문화예술산업과 협의
- 마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제22조를 삭제한다.

제23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세계유산의 등재) 도지사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, 충청북도의 우수한 문화재가 세계유산,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(이하 “세계유산 등” 이라 한다)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22조(세계유산 등의 보호·관리)</p> <p>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 또는 선정 신청 중인 유산에 대하여 별도의 보존·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시장·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23조(세계유산추진위원회 설치)</p> <p>① 세계유산 등의 등재 또는 선정 신청과 보존·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세계유산추진위원회(이하 “</p>	<p><삭 제></p>

세계유산추진위원회“라 한다)를
둘 수 있다.<개정 2012. 7. 16>

② 세계유산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
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
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10
명 이내의 학술자문단과 10명 이
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추진위원
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
도지사의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.

1. 세계유산 등의 등재 추진 및 보
존·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
관한 사항

2.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 추진 중인
유산 지구, 등재된 유산에 대한
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
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세계유산 등에 관련하여
도지사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

관계법령 발췌

□ 문화재보호법

제19조(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) ① 문화재청장은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」, 「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」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,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.

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,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(이하 이 조에서 “세계유산등“이라 한다)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·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,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[참고자료]

세계유산 등재 관련 타 시도 조례 현황

순번	자치단체	조례명	공포일자
1	인천광역시 강화군	강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	2014.11.18.
2	경기도	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	2016.11.1.
3	경상남도	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·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	2014.10.10.
4	경상북도	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1.1.6.
5	전라북도 고창군	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	2015.11.20.
6	충청남도 공주시	공주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6.6.1.
7	경상남도 김해시	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·관리에 관한 조례	2016.10.14.
8	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·관리에 관한 조례	2016.4.12.
9	부산광역시	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·관리에 관한 조례	2016.11.2.
10	전라남도 보성군	보성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	2016.3.29.
11	충청남도 부여군	부여군 세계유산 등재·관리·활용 및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	2016.5.20.
12	충청남도 서천군	서천군 재단법인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6.3.10.
13	경기도 수원시	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	2016.8.12.
14	경기도 수원시	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시행규칙	2013.9.5.
15	전라남도 신안군	신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	2014.2.26..
16	강원도 원주시	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2016.1.8.
17	전라북도 익산시	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4.3.14.
18	전라북도 익산시	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	2015.5.7.
19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·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	2015.9.30.
20	전라남도	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·관리에 관한 조례	2015.12.31.

21	전라남도	전라남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칙	2008.6.5.
22	전라북도	전라북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6.3.25.
23	전라북도	전라북도 세계유산 보존·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5.5.1.
24	충청남도	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6.4.11.
25	충청남도	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·관리 등에 관한 조례	2015.2.23.
26	경상남도 통영시	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2015.2.13.